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212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78년 10월 18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 영 제3조 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편물수취함
2. 보안등
3. 관리사무실
4. 공공시설(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제3조(복리시설) 영 제4조 제5호의 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벨레비전공청시설
2. 공동저탄장시설
3. 노인정
4. 교육시설
5. 비상급수시설

제4조(주택건설 계획서등) ①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의 주택사업실적 및 계획 총괄을 말한다.

③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 2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2. 건설위치
3. 건설공급대상자의 범위
4. 건설자금조달채원

⑤ 영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장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영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조사)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영 제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2. 가구 및 가구원수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제8조(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 ①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2. 도지사가 발행하는 건축분야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3. 사무실 보유증서(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것)
 4. 전화 보유증명서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연 1회 3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려

하지 아니하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등록을 실시할 때에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영 제 9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 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부는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다.

⑥ 등록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⑦ 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영 제 9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수수료는 1 건당 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로 한다.

제 9 조(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등록업자는 영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사업실적과 이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별지 제 10 호서식 및 별지 제 10호의 2 서식에 의하여 당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8 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지정신청 등) ① 영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 면허증 사본
2. 법인 등기부 등본
3. 주택건설사업실적증명서 또는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증명서
4.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6. 기자재생산능력 증빙자료
7. 장비보유현황서 및 그 증빙자료
8. 지정신청공고일 현재의 예금잔고증명서

② 건설부장관이 법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지정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업자 지정사항 변경사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④ 지정업자는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사업실적과 이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별지 제 15호서식 및 별지 제 16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부장관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매년 1회이상 지정업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17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실태조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1 조(국민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 18호서식 내지 별지 제 20호서식에 의한다.

제 12 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 영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 21호서식 내지 별지 제 23호서식에 의한다.

제 13 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 등) ① 영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도
2. 징구기관명(제출처)
3. 매입자의 성명

② 영 제 16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발행일자 및 재발행사유
2. 신청인의 성명
3. 매입금액

제 14 조(사실증명서) 영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증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 24호서식에 의한다.

제 15 조(주택상환사채) ① 영 제 27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5. 보증기관의 유무

② 영 제 2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 2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주택 상환사채발행계획서) 영 제28조 제15호의 규정에서 “기타 전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의 확보유무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
3. 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조달계획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 등) ①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농어촌지역에 전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창고 및 변소(본 건물과 분리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주택공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주택의 공급조건과 방법 및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따로 전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택공급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택공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전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에 게기한 도서를 말한다.

④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기타 전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전축대지증명서를, 사업주체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전축대지증명서를 말한다.

⑥ 시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⑦ 전설부장관은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부·처, 청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전설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
2. 지적도(도시계획시설이 표시된 축척 1,200분의 1인 도면)
3. 도시계획시설도서
4. 제1호내지 제3호 이외에 도시계획결정에 참고가 되는 도서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및 세대당 주택가격은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건설공정이 20퍼센트 이상으로써 분양공고를 행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중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로서 사업비 및 세대당 주택가격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전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조정
 3.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변경
- ② 사업주체가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시장, 군수가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기부 체납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기부체납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종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보·스ラ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 1 항 제 2 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간선시설의 종류 및 설치한계) 법 제 3 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 및 설치한계는 별표 5 와 같다.

제25조(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신청) ① 영 제39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신청서는 별지 3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9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대지증명(시장·군수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시장·군수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발행한 것)

제26조(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세목) 영 제3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세목은 별표 6 과 같다.

제27조(면허증의 교부) ① 법 제41조제 1 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제30호 서식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라 한다)가 주택자재생산업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부분을 전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주택자재생산업자는 그 면허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면허판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주택자재의 생산기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생산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30조(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 ① 도지사는 매년 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0호의 서식에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② 주택자재생산업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실태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종합한 후 그 내용을 전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겸사업체의 증표) 법 제49조 제 2 항에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편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무주택근로자의 주택건설)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당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당해 기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2. 해당근로자의 재직증명서

3. 잡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최근 3개월간 이상 납부한 것에 대한 것)
 4.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
 5. 무주택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산세, 비과세증명, 주민등록등본 및 가옥대장등본)
- ②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근로자”라 함은 당해 기업체의 임원급이 아닌 월급 또는 일급에 의한 생활자를 말한다.

제33조(시범주택의 건설) ① 영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 1 항의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특수공법 및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명서

- ③ 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시범주택 건설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34조(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별로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주택의 형별로 고유번호를 붙여 공고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사협회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설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은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와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 1. 인구수: 최근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증가율을 감안하여 산출할 것.
2. 주택수: (전년도 주택수+당해년도 건설호수) 당해년도 멀실호수
3. 가구수: 1인가구 및 준가구를 제외하고 보통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것.

4. 사업비: 대지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하며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산출할 것.

- 가. 공공부문: 국가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을 포함한다)이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주택자금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포함.
- 나. 민간부문: 순수히 자기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며 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포함함.

$$5. 주택공급율 = \frac{\text{주택수}}{\text{가구수}} \times 100$$

※ 첨부서류: 1. 주택 및 택지현황

2.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
3.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4. 등록업자의 주택사업실적 및 계획총괄
5. 주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

1. 총괄표 주택 건설계획 [별지 1호서식]

구 분	현 황	연 도 계 획	비 고
1. 인구수(천인)			
2. 주택수(호)			
3. 가구수(가구)			
4. 건설호수(호)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5. 사업비(천원)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6. 멀실호수(호)			
7. 주택공급율			

1. 주택 및 택지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농어촌 역	비 고
주택	① 총 계			
	② 일 반 주 택			
	③ 무 허 가 주 택			
	④ 불 량 주 택			
	⑤ 노 후 주 택			
	⑥ 기 타			
	⑦ 토 지 총 면적			
	⑧ 택 지 총 면적			

지	⑨ 주 거 지 역			
	⑩ 준 주 거 지 역			
	⑪ 주 거 전 용 지 역			
	토 지 구 회 정 리			
	⑫ 사 업 지 구 면 적			
	⑬ 아파트 지 구 면 적			
	⑭ 일 단 의 주 택 지 조 성 사 업 지 구 면 적			

※ 인구 5만인 이상의 읍·읍지역은 도시에 포함 시킬 것.

- 일반주택 : 다음 각호(2,3,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 무허가주택 : 건축법상의 허가 및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주택 ('62년도 이전에 건립된 주택의 경우에는 조선시가 지령에 의한 허가 기타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주택).

'34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의 경우에는 가옥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주택)

3. 불량주택 : 건축법상의 허가절차 유무를 불문하고 주택설비의 미비 사용된 주택자재의 불량, 도시미관상 철거대상 주택 기타 주거의 용에 공하기에는 적합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노후주택 : 건축연도가 철근 철골조의 경우에는 50년이상, 불록연화조의 경우에는 30년이상, 목조의 경우에는 20년이상 각각 경과된 주택

2.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

시군별	주택형별			사업주체별				⑧ 호당 또는 세대당 평균면적 (m ²)	⑨ 건세대수 (전세대)	⑩ 소요대지 면적 (천 m ²)	⑪ 사업비 (백만원)	⑫ 비고
	① 단독	② 연립	③ 아파트	④ 지차단체	방	⑤ 공공기관	⑥ 등록업자					

3.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시군별	조달계획					투자계획					⑪ 비고
	① 국특 민별회 택계 사자 업금	② 자체부 담금	③ 정부보 조금	④ 입 금	⑤ 기 타 자 금	⑥ 주택 전 설 사 업	⑦ 주택 개 량 사 업	⑧ 택지 조 성 사 업	⑨ 주비 택축 자사 재업	⑩ 기 타 사 업	
합계											

4. 등록업자의 주택사업실적 및 계획총괄

(단위 : 천)

시군별	사업실적								사업실적								⑯ 비고
	형별				규모				형별				규모				
	① 단독	② 연립	③ 아파트	④ 계	⑤ 85m ² 이하	⑥ 85m ² 초과	⑧ 계	⑨ 단독	⑩ 연립	⑪ 아파트	⑫ 계	⑬ 85m ² 이하	⑭ 85m ² 초과	⑮ 계	⑯ 계		
합계																	

5. 주택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시군별	기술자										기능공										비고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소계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소계			
	① 1급	② 2급	③ 1급	④ 2급	⑤ 1급	⑥ 2급	⑦ 1급	⑧ 2급	⑨ 1급	⑩ 2급	⑪ 1급	⑫ 2급	⑬ 1급	⑭ 2급	⑮ 1급	⑯ 2급	⑰ 1급	⑱ 2급	⑲ 1급	⑳ 2급		
합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한국주택은행)

년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분기별	조달계획					비고
		총계	1/4	2/4	3/4	4/4	
국민주택자금	① 국민주택채권자금						
	② 주택복권자금						
	③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④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⑤ 기타						
	⑥ 소계						
	주택부금 및 예금 수입						
	⑧ 주택채권자금						
	⑨ 차입금						
	⑩ 기타						
	⑪ 소계						
	⑫ 총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년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분기별	조달계획				비고
		총계	1/4	2/4	3/4	
국민주택자금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농업협동조합조성자금					
	소계					
	일반자금					
	소계					
	총계					

주택건설사업계획서

(국가기관)

사업주체	건설위치	건설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건설자금조달재원(확보여부)	공급대상자의 범위	비고
		형별	세대당규모	총세대수					

2. 사업목적 및 효과

사업목적	사업효과

주택건설장기계획서

1. 총괄표

구분	현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비고
1. 인구수(천인)								
2. 주택수(호)								
3. 가구수(가구)								
4. 건설호수(호)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5. 사업비(천원)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6. 멀실호수(호)								
7. 주택공급율								

2. 주택 및 택지현황

구분	현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비고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주택수	총계 일반주택 무허가주택 불량주택 노후주택 기타														
지택지	토지총면적 택지총면적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면적 아파트지구 계획면적 일단의주택지조성 사업계획면적														

3.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구 분	연도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비 고
	국민주택자금특별회계 자체부담 정부보조 차입 기타						
	소 계						
	주택건설사업 주택개량사업 택지조성사업 주택자재비치사업 기타사업						
	소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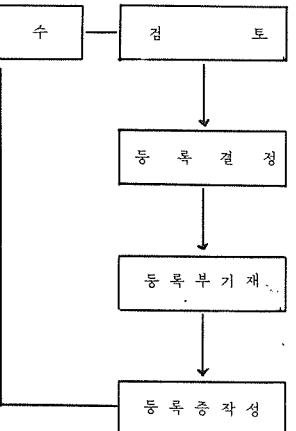
[별지 5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근무처 :	
귀하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별지 6호 서식]

주택건설사업자동록신청서				처리기간 25
신	① 대 표 자 ③ 상 호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전화번호	
청	⑤ 영 업 소 자 ⑥ 자 본 금			
자	⑦ 사 무 실 ⑧ 기 출	면적 (자기소유, 전세, 임대,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동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건설부장관 귀하				
⑨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1부) (2) 도지사가 발행하는 건축분야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면허증 자본 각 1부 (3) 사무실보유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1부 (4) 전화보유증명 (전화가입증명서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5,000원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인	처 리 기 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신 청 서 작 성	제 출 교 부	접 수	검 토	등 록 결 정	등 록 부 기 재	등 록 증 작 성
						

[별지 제 8 호 서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1. 상호 :
2. 성명 :
3. 영업소소재지 :
4. 등록일자 :
주택건설촉진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 도,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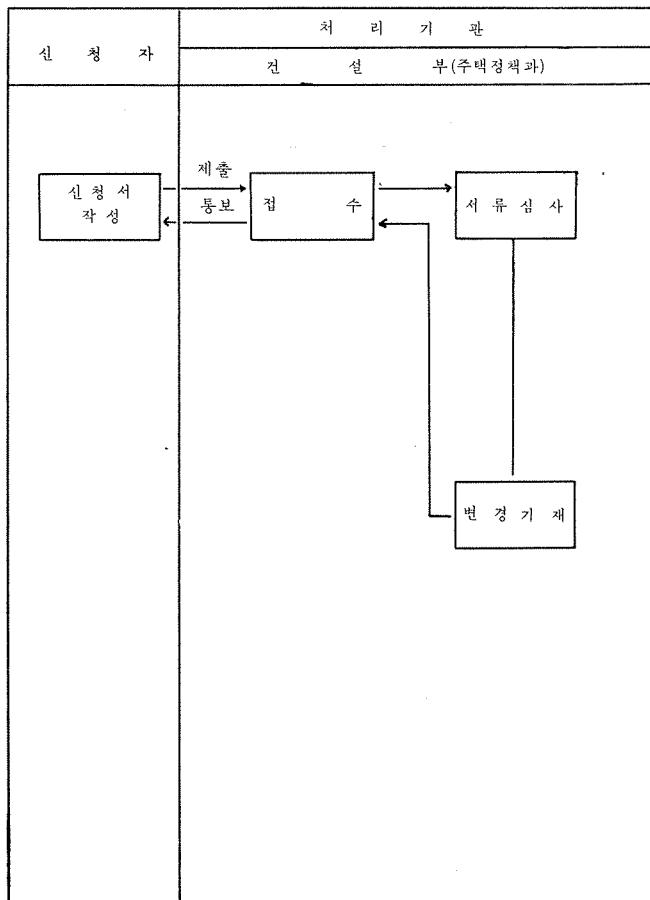
[별지 제 8 호 서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원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명	대표자명	영업소소재지	전화	자본	기술·능력	비고

[별지 제 9호 서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상호			
대표자 (사업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			
자본			
건축기술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input type="radio"/> 인	
첨부서류 : 각종증빙자료 1부 귀하			



[별지 제10호의 2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등록번호 :
등록업자명 :

구분	형별	구조	총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총대지면적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위치
※ 1. 구분란에는 임대·분양 기타로 구분할 것 (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2. 형별란에는 단독아파트 연립별로 평수 ($\frac{\text{전용면적}}{\text{건축면적}}$) 를 기입할 것 3. 건설위치는 가능능 상세히 기입하되 확보여부를 명기할 것.										

주택건설사업실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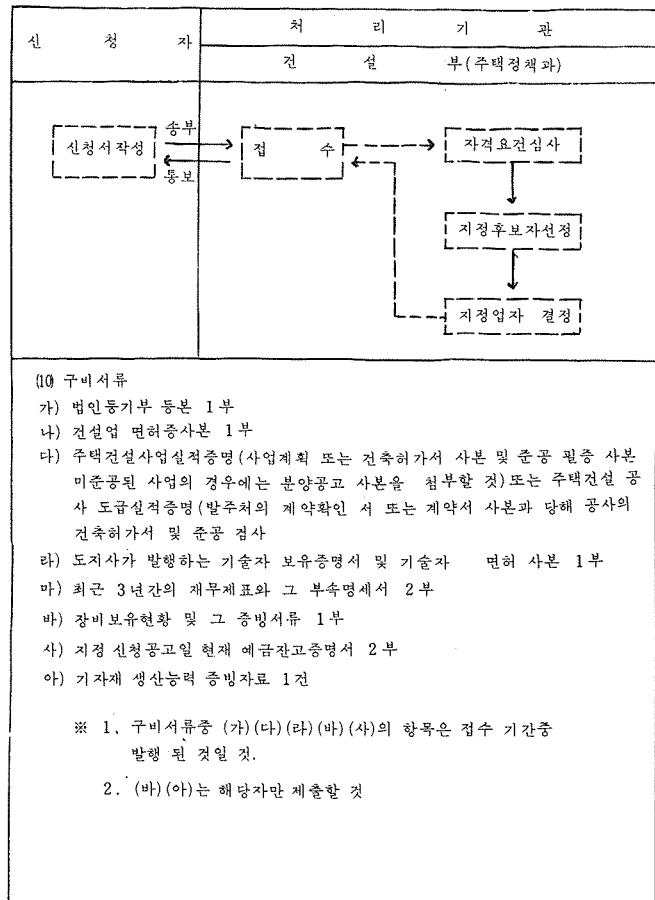
[별지 제10호 서식]

연도	구분	형별	구조	총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총대지면적	위치
※ 1. 연도란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기입할 것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10월 말까지) 2. 구분란에는 임대·분양·기타로 구분할 것 (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3. 형별란에는 단독 아파트 연립별로 평수를 기입할 것 ($\frac{\text{전용면적}}{\text{건축면적}}$) 4. 건설위치는 가능한한 상세히 기입할 것.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1) 대표자 (3) 상호 (5) 영업소소재지	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변호		
		(4) 전화번호		
(6) 자본금				
(7) 전면허취득종목 영				
(8) 주택건설설계설계 주택건설설계설계 주택건설설계설계 주택건설설계설계 주택건설설계설계 주택건설설계설계				
(9) 기술자보유현황	분야별	1급	2급	계
	토목분야	인	인	인
	건축분야	"	"	"
	기술분야	"	"	"
	전기분야	"	"	"
	안전관리분야	"	"	"
건축사	"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정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설부장관 귀하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2호 서식]

지정업자지정서		
제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지정년월일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지정업자로 지정함.		
년 월 일		
건설부장관 인		

[제13호 서식]

지정업자지정대장					
지정번호	제호	지정일자	19. . . .	설립등기일자	19. . . .
상호					
대표자	(한글)	(한자)			
영업소소재지					
경영상태					
자본금	변경년월일	증자또는감자금액	경영평가	평가년월일	평가기관
기재사항변경					
상호	변경년월일	대표자	변경년월일	소재지	변경년월일

지정업자지정사항변경신서			처리기간 15일
상호		전화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자본금 기출능력			
주택건설촉진법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업자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건설 관리부			
첨부서류 : 각종증빙자료 1부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신 청 자	처 리 기 관		
	전 설 부 (주 택 청 체 과)		
신청서 작성 인	제출	접 수	서류 접사
	통보		변경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지정업자실태조사부

지정번호 : 제 호

상 호		전 화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기 재 사 항 변 경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자 본 금	기 술 능 력

주택건설사업 실적

연도별	지역별	형별	세대당 구 모	전 설 총 규모	사업비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비 고

주 택 건 설 사 업 실 적
(지정업자)

[별지 제15호 서식]

연 도	구 분	형 별	구 조	총 수	동 수	세 대 수	사 업 비	총 대 지 면적	위 치	비 고

- 연도란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기입할 것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10월 말까지를 기재)
- 구분란에는 임대, 분양, 기다로 구분할 것(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 형별란에는 단독, 아파트, 연립별로 평수($\frac{\text{전용 면적}}{\text{세대당 건축면적}}$)를 기입할 것.
- 건설위치는 가능한한 상세히 기입할 것.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지정업자)

연도	구분	형별	구조	총 수	동 수	세 대 수	사 업 비	총 대 지 면적	착공예정 일정	준공예정일	위 치	비 고

- 구분란에는 임대, 분양, 기타로 구분할 것(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 형별란에는 단독, 아파트, 연립별로 평수($\frac{\text{전용 면적}}{\text{세대당 건축면적}}$)를 기입할 것.
- 건설위치는 확보 또는 미확보 여부를 명기하고 가능한한 상세히 기재할 것.

[별지 제18호 서식]

국민주택 자금조달계 회서 (지방자치 단체)

(단위 : 백만원)

[별지 제19호 서식]

국민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한국주택은행)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조달재원별	조 달 계 획					비 고
	총계	2/ 4	1 / 4	3 / 4	4 / 4	
자 체 부 담						
정부로부터의 차 입 및 보 조						
한국주택은행의 로부터						
농업협동조합중 앙회로부터의 차 입						
외국으로부터의 차 입						
국민주택사업특 별회계 재산의 매 각						

조달제원별	분기별	조 달 계 회					비 고
		총 계	1 / 4	2 / 4	3 / 4	4 / 4	
1. 국민주택재원							
2. 주택복원							
3. 외국으로부터 의 차입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기타	타						

新刊案内

디자인 感覺 10大要素와 10大原理,
우리나라 아파트의 形成過程과 計劃의 要點
아파트 平面 660種

姜明求編著